

공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공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만을 전담한다.
2.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결원은 본 위원회가 보선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긴급한 인선 공천도 본 위원회가 한다.

제3조 (조직과 임원)

본 위원회는 각 노회가 다년간 총회 총대로 피선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 1인(비 총대도 가함)과 여성 1인을 포함하여 조직한다. 목사, 장로 동수를 원칙으로 한다. 임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4조 (회의)

1. 본 위원회는 총회 2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로 수시 소집한다.
2.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개회 중에도 그 임무 수행상 회집할 수 있고 위원은 총회 당연직 언권위원 이 된다.

제5조 (공천업무)

1. 공천업무는 지역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 기준을 세우고 공천한다.
2. 공천업무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 수를 참작하여 공천한다.
3.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단 노회별 1인 공천하는 위원회는 여성전문위원 1인을 공천위원회가 추가 공천한다.
4.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업무만 맡을 수 있으며 기존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 공천된 인선은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총회 폐회 기간 중 공천된 인선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정기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안전심의부 부원
 - 2) 총회 사업부서 및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
 - 3)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임시위원
 - 4) 총회가 공천 위임한 기타 위원
7. 공천업무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

제6조 (임기)

1. 공천위원회 임기는 노회에서 선임한 첫 공천위원회 정기회로부터 2년 후 공천위원회 정기회 직전까지로 하되, 매년 2분의 1씩 목사는 장로로, 장로는 목사로 교체한다.
2. 노회 공천위원이 결원되었을 시에는 해 노회가 보선하고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